

의안번호	2205299
의 퇴 인	이언주 의원
회 답 일	2025. 2. 24.
추계번호	24A4853
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9조의3(화재공제 운영 지원)	○ 정부는 화재로 인한 활성화구역 내 상인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2	안 제30조(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- 1. ~ 3. (현행과 같음) - 4. 구역 활성화 전략 및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조사·연구비 등의 보조 - 5. 상인의 판로 촉진 및 홍보 지원 - 6. 전자상거래, 신용카드결제,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,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,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,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등 상거래현대화 촉진 - 7. 구역 활성화를 위한 대학, 비영리법인, 단체 및 지역상생협의체·자율상권조합 간 산학협력 사업 지원	재량규정
3	안 제30조의2(빈 점포의 활용 촉진)	○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법인,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- 1. 상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·교육 프로그램 또는 행사 등을 위한 장소 - 2. 고객안내시설,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- 3. 활성화구역 내 청년상인 및 예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- 4.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- 5.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- 6. 지역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, 임산물, 축산물 및 수산물(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)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의 설치 장소 - 7.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○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,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
4	안 제30조의3(공동사업의 활성화)	○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- 1. 상품, 상표,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- 2. 구매, 물류,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- 3.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 - 4. 광고, 옥외광고물의 제작·표시·설치 등 활성화구역의 홍보에 관한 사업 - 5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						
1	안 제29조의3(화재공제 운영 지원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개정안의 화재공제 가입자인 활성화구역 내 상인 수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, 정부의 지원금액이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고 예산의 범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계에 한계가 있음 - 참고로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근거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소관</td><td>현행 사업(세부사업 또는 내역)</td><td>2025예산</td></tr> <tr> <td>중소벤처기업부</td><td>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(전통시장 화재공제)</td><td>2,000백만원</td></tr> </table>	소관	현행 사업(세부사업 또는 내역)	2025예산	중소벤처기업부	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(전통시장 화재공제)	2,000백만원
소관	현행 사업(세부사업 또는 내역)	2025예산						
중소벤처기업부	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(전통시장 화재공제)	2,000백만원						
2	안 제30조(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개정안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과 유사하					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		계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나, 재량지출성 사업인 동 지원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의 예산 심의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되므로 현시점에서 향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3	안 제30조의2(빈 점포의 활용 촉진)	
4	안 제30조의3(공동사업의 활성화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화재로 인한 활성화구역 내 상인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근거하여 개정안과 유사한 사업(“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(전통시장 화재공제)”)을 수행하고 있음
 - － 동 사업은 “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정부는 사업운영비용을 지원”하는 것으로, 2025년 예산은 화재공제시스템 운영, 홍보 및 인건비 등 명목으로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음
- 다만, 개정안의 화재공제 가입자인 활성화구역(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)의 상인 수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, 정부의 지원금액이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고 예산의 범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개정안의 화재공제 가입 대상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상인임
 - －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은 각각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와 제15조¹⁾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함

1)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2. “지역상생구역”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
 나.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·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
 다.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

- 참고로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근거한 현행 화재공제사업은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 2024년 9월 기준 가입점포 수는 56,038건임

[표 1]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현황(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.9.
가입점포수(건)	26,921	35,865	46,778	52,916	56,038
가입률(%)	14.8	19.7	25.7	30.3	32.0
누적 지급금(백만원)	894	1,280	1,980	2,584	4,611
누적 적립금* (백만원)	4,710	7,305	10,601	13,869	15,475

주: *총 공제기금에서 누적 지급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(금융기관 예치)

자료: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,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」, 2025. 2.

- 한편, 개정안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과 유사하게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의 관련 유사 규정은 제17조(빈점포의 활용 촉진), 제25조(상거래현대화의 촉진), 제26조(공동사업의 활성화), 제27조(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), 제29조(산학협력사업 등 지원) 등임
 - 다만, 재량지출성 사업인 동 지원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의 예산심의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되므로 현시점에서 향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활성화구역 중 지역상생구역은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, 자율상권구역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총 12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음

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

4. “자율상권구역”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.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

나.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·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

다.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,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

[표 2] 자율상권구역 현황(2024년 말 기준)

연번	지자체		구역명	구역 지정 고시일
	광역시	기초		
1	경남	함양군	함양한들상권	2023-08-31
2	경북	김천시	김천 삼색이수상권	2024-04-11
3	부산	동구	초량 이음자율상권	2024-04-30
4	부산	남구	유엔남구 대학로 상권	2024-05-01
5	전남	강진군	강진읍 청년통·오감통 상권	2024-05-02
6	전남	영암군	영암읍 라인업 자율상권구역	2024-04-19
7	전남	나주시	나주 영산포 자율상권구역	2024-04-22
8	부산	기장군	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	2024-08-26
9	경남	거제시	거제 고현자율상권	2024-11-29
10	충북	청주시	청주시 소나무길 일원 자율상권구역	2024-12-06
11	충북	음성군	삼성면 원도심 자율상권구역	2024-12-05
12	제주	제주시	제주시 원도심 상권	2024-12-31

자료: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,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」, 2025. 2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